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선	기 관 의 장
람	

제 1417 호 2023. 8. 31.(목)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-173호[하천점용 허가 고시]..... 1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-174호[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]..... 2

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-1151호[2023년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(결산) 공고]..... 4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-1160호[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]... 5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-1161호[도시계획시설(청소년수련시설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열람공고]... 7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-1173호[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..... 10

안 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 → 구정소식 → 공고 → 북구공보
-----	--

회								
람								

발행 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: 미디어정보과(☎241-7125,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- 173호

하천점용 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8월 29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성명	한국전력공사 동울산지사		
주소	울산광역시 복구 명촌23길 8		
점용 위치	○ 울산광역시 복구 신천동 745-118번지	하천의 명칭	○ 매곡천
점용 내용	○ 강관전주 설치(2본)	점용 면적	○ 일시: 4.5m ² ○ 계속: 0.6m ²
점용 기간	○ 일시: 2023. 8. 29. ~ 2023. 8. 31. ○ 계속: 2023. 9. 1. ~ 2027. 12. 31.		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- 174호

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
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818-2번지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
2023년 8월 31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류 :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

나. 명칭 : 도시계획시설(노외주차장 조성)사업

2. 위 치 :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818-2번지

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가. 결정현황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	최초결정일
261	주차장	노외주차장	양정동 818-2번지	1,000.1	'15. 7. 29. 울고168호

나. 토지조서

토지소재	지 번	지 목	단 위	면 적	편입면적	비 고
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	818-2	주차장	m ²	1,000.1	1,000.1	
계					1,000.1	

다. 시설물조서

개 요	주시설	부대시설	비 고
	주차장	관광휴게시설 (휴게소)	
면 적	1,000.1	199.84	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명 : 허미순

나. 주소 :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로 60, 208동 1204호(남외동, 남외푸르지오2차아파트)

5. 사업기간 : 인가일 ~ 2024. 7. 31.

6. 수용할 토지·지번·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: 붙임 명세서와 같음

7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

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 없음

8.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(☎ 052-241-799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수용·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(1)

번호	지번 (양정동)	지목	대장 면적	편 입 면 적		소 유 자	
				부지	계	성 명	주 소
1	818-2	주차장	1,000.1	1,000.1	1,000.1	허미순	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로 60, 208동 1204호
계			1,000.1	1,000.1	1,000.1		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23 - 1151 호

2023년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재정공시(결산) 공고

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『2023년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재정공시(결산)』 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28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- ◆ 우리 구의 2022년도 살림규모 (자체수입 + 이전재원+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)는 6,017억원으로, 전년대비 28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.
 - 자체수입 (지방세 및 세외수입)은 1,219억원이며,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42만원입니다.
 - 이전재원 (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, 보조금)은 4,024억원입니다.
 - 지방채,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73억원입니다.
- ◆ 우리 구의 2022년 살림규모는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(10,473억원) 보다 4,456억원이 적습니다.
 - 자체수입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(1,885억원)보다 666억원이 적으며, 이전재원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(6,625억원)보다 2,601억원 적습니다.
 - 우리 구의 2022년 채무액은 없으며,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채무액은 35억원입니다.
 - 공유재산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(11,079억원)과 비교하여 2,850억원이 적습니다.
- ◆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, 우리 구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살림규모는 작지만 자체수입의 비중이 높고, 채무가 없어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◎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(홈>정보공개>재정공시>재정(결산)공시)에서 보실 수 있으며,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담 당 자 : 기획예산과 김태연(052-241-7115)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- 1160호

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

울산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라며,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8월 31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류: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

나. 명칭: 도시계획시설(송정동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)사업

2. 위 치: 울산광역시 복구 송정동 1255-1번지

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가. 결정현황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	최초결정일
164	주차장	-	송정동 1255-1번지	1,016.7	'07. 12. 27 울고451호

나. 토지조서

토지소재	지 번	지 목	단 위	면 적	편입면적	비 고
울산광역시 복구 송정동	1255-1	주	m ²	1,016.7	1,016.7	
계					1,016.7	

다. 건물조서

개 요	주차전용 건축물		합계 (m ²)
	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) (m ²)	근린생활시설(사무소), 자동차관련시설(세차장) (m ²)	
면 적	352.545	146.87	499.415

라. 시설물조서

동 별	건 축 면 적				비 고
	자동차관련시설 (주차장) (m ²)	근린생활시설 (사무소) (m ²)	자동차관련시설 (세차장) (m ²)	합계(m ²)	
1동(지상 1층)	282.545	-	119.37	401.915	
2동(지상 1층)	70.0	27.5	-	97.5	
계	352.545	27.5	119.37	499.415	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명: 박현우

나. 주소: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47번길 27(야음동 힐스테이트 수암)

5. 사업기간: 인가일 ~ 2025. 8. 31.

6. 수용할 토지·지번·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

: 붙임 명세서와 같음

7. 열람내용: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내용

8. 열람기간: 공보게재 다음날부터 14일간

9. 열람장소: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

10.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(☎ 052-241-7993)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수용·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

번호	지번 (송정동)	지목	대장 면적 (m ²)	편 입 면 적		소 유 자	
				부지(m ²)	계(m ²)	성 명	주 소
1	1255-1	주	1,016.7	1,016.7	1,016.7	박현우	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47번길 27
계			1,016.7	1,016.7	1,016.7		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- 1161호

도시계획시설(청소년수련시설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열람공고

도시계획시설(청소년수련시설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하고, 같은 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,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8월 31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04-7번지 일원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 류: 도시계획시설(청소년수련시설) 사업

나. 명 칭: 도시계획시설(청소년수련시설) 조성사업

3. 면적 또는 규모

가. 면 적 : (기정) 59,355㎡ → (변경) 59,338㎡

나. 토지이용계획

(단위: ㎡)

구분	계	관 리 사무소	체 육 활동장	특성화 활동장	야영장	주차장	내 부 로	녹 지	정화조	저류조
기정	59,355	3,104	2,969	1,619	11,810	2,043	11,460	25,245	0	1,105
변경	59,338	3,104	2,969	1,619	11,786	2,043	11,467	25,245	0	1,105

4.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1) 성 명: (주)신명바다청소년야영장 대표이사 박만석
- 2) 주 소: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04-7번지

5. 사업기간 : 2014. 8. 28. ~ 2023. 12. 31.
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 : 붙임 명세서와 같음

7. 도시관리계획(청소년수련시설) 결정(변경) 조서 및 사유서

가. 청소년수련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	면 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기정	증감	변경		
변경	2	청소년 수련시설	청소년 야영장	북구 신명동 산27-1	북구 신명동 104-7	59,400	감 62	59,338	'13.12.26. 울북고208호	-

나. 청소년수련시설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 설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2	청소년 수련시설	· 면적감소 : 감 62m ² -A=59,400m ² → 59,338m ²	· 지적 분할 결과 반영

8. 열람기간 : 공보 게재 익일로부터 14일 간

9. 열람장소 :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

10.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(☎052-241-799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·지번·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]

연 번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m ²)		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비고
				공부	편 입		성명	주소	권리자명	주소	
					당초	변경					
합계					59,355	59,338					
1	신명동	104-10	임	11,595	11,595	11,595	주식회사 신명바다 청소년야영장	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04-7	남원새마을금고	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413(하정동)	근저당권
									남원새마을금고	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413(하정동)	지상권
2	신명동	104-7	임	35,511	35,511	35,511	주식회사 신명바다 청소년야영장	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04-7	남원새마을금고	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413(하정동)	근저당권
									남원새마을금고	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413(하정동)	지상권
3	신명동	104-4	임	8,022	8,022	8,022	주식회사 신명바다 청소년야영장	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04-7	남원새마을금고	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413(하정동)	근저당권
									남원새마을금고	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413(하정동)	지상권
4	신명동	104-6	임	1,740	399	375	주식회사 신명바다 청소년야영장	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04-7	남원새마을금고	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413(하정동)	근저당권
									남원새마을금고	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413(하정동)	지상권
5	신명동	산1-3	임	1,732	1,732	1,732	고*숙	전라북도 남원시 오들1길 **, ***동 ***호(월락동, *****)	남원새마을금고	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413(하정동)	근저당권
							박*진	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***, ***동 ****호(월락동, ** *** ****)			
							박*면	전라북도 남원시 오들1길 **, ***동 ***호(월락동, *****)	남원새마을금고	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413(하정동)	지상권
							윤*희	전라북도 남원시 오들1길 **, ***동 ***호(월락동, *****)			
6	신명동	104-11	도	1,374	1,374	1,374	국토교통부				
7	신명동	104-12	임	554	554	554	국토교통부				
8	신명동	산27-3	도	160	160	160	국토교통부				
9	신명동	산28-1	구	4,106	8	15	농림축산식품부				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- 1173호

울산광역시 복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복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 및 「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3년 8월 31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. 12. 31.자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안정적인 의료급여사업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회계관계공무원 책임에 대한 근거법률 변경(안 제4조)
-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“2028년 12월 31일”까지로 연장(안 제8조의2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1조~제3조, 제5조, 제6조, 제9조)

3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

「의료급여법」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

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 참조.

5. 의견제출

-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0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노인장애인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라. 제출처

- 1) 주 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북구청 노인장애인과
- 2) 전화번호 : 052)241-7624, 팩스번호 : 052)241-7669
- 3) 전자우편(E-mail) : meandyou33@korea.kr

6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

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의견 제출자

성 명
(개인/단체)

전화번호

주 소

개인정보취급
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의거하여
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. 동의검토의견
(의견제출내용)「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입법
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.

2023년 월 일

제출자

(서명 또는 인)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

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

울산광역시 복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복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를 “「의료급여법」 제26조 및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”으로 하고, 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(이하 “회계”라 한다)”를 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회계”를 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(이하 “회계”라 한다)”로 하고, “기금”을 “의료급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로 하며, “「의료급여법」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)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「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제1항 중 “6월이내”를 “6개월 이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대불”을 “대지급”으로, “송부하고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”를 “송부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8조의2 중 “특별회계”를 “회계”로,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상환금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, “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기금운영관”을 “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기금담당관”으로 한다.

상환금 내 용	대지급금	상환액	미납액
	원	원	원

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(이하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(이하 “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의료급여법」 제26조 및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-----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----- -----.</p>
<p>제2조(세입과 세출) 이 회계는 기금에 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「의료급여법」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</p>	<p>제2조(세입과 세출) ---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(이하 “회계”라 한다)----의료급여기금(이하“기금”이라 한다)-----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-----.</p>
<p>제3조(회계공무원의 임명) ① (생략)</p> <p>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</p>	<p>제3조(회계공무원의 임명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제1항에 따른 -----</p>

을 들 수 있다

제4조(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) 「지방재정법」 중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,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.

제5조(수입)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미납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, 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.

③ (생략)

제6조(지출) 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비 대불 등의 의료급여사업비 및 기타경비의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고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.

-----.

제4조(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)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수입) ① -----

----- 6개월 이내 -----

-----.

② 제1항에 따른 -----

-- 따른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지출) ① -----
--- 대지급 -----

----- 송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-----

-----.

제8조(준속기한) 특별회계의 준속기한
 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 제9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
 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.

제8조(준속기한) 회계-----
 -- 2028년 12월 31일-----.
 제9조(준용) -----
 -----따른다.

현 행

개 정 안

【별지 제2호서식】

【별지 제2호서식】

(후 면)

(전 면)

(후 면)

(전 면)

의료급여기금상환독촉장		
제 호	연도	분기분
대불 상환 금	금	원
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까지 ○○○에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.		
년 월 일		
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㉠		

우 편 엽 서

□ □ □ □ □

귀 하

의료급여기금상환독촉장		
제 호	연도	분기분
대지 급상 환금	금	원
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까지 ○○○에 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 기한까 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.		
년 월 일		
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㉠		

우 편 엽 서

□ □ □ □ □

귀 하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·② (생략)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□ 「의료급여법」

제26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은 급여비용, 대지급에 드는 비용,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.

1.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
2. 국채·공채의 매입

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

제28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·② (생략)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(이하 “기금계정”이라 한다)을 설정·운용하여야 한다.